

#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67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3. 10.

발 의 자 : 운영위원회

## 1. 제안이유

「청원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청원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를 변경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## 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##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”로 한다.

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2. 「청원법」 제6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

제5조제1항 중 “「청원법」 제8조”를 “「청원법」 제16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의신청”을 “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1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처리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청원의 불수리)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「청원법」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</li> <li>3. <u>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모독하는 사항</u></li> </ol> <p>제5조(이의신청) ① 「청원법」 제8조에 따라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가 반려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의장은 <u>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4조(청원의 불수리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「청원법」 제6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</li> <li>3. &lt;삭제&gt;</li> </ol> <p>제5조(이의신청) ① 「청원법」 제16조제1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-----</p>

원을 접수하고, 회부할 소관 상  
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제6조  
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  
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 
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

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김학철